

#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울동 23-1번지 일원(파주운정3지구 A13블록)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아파트 20개동, 총 1,745세대 중 특별공급 99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170세대
- 입주예정 : 2022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구분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총세대수
민 영 주 택	01	59.9700A	59A	59.9700	22.5527	82.5227	324	239	563
	02	59.9659B	59B	59.9659	23.3736	83.3395	77	62	139
	03	59.9559C	59C	59.9559	22.6055	82.5614	116	85	201
	04	59.8470D	59D	59.8470	23.0314	82.8784	48	39	87
	05	84.9210A	84A	84.9210	25.6005	110.5215	105	80	185
	06	84.7106B	84B	84.7106	26.3828	111.0934	118	89	207
	07	84.9820C	84C	84.9820	26.8492	111.8312	93	73	166
	08	84.9646D	84D	84.9646	26.0555	111.0201	111	86	197
공급세대 합계							992	753	1,745

###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 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59A (예비)	59B (예비)	59C (예비)	59D (예비)	84A (예비)	84B (예비)	84C (예비)	84D (예비)	계 (예비)	
장애인	경기도청	10(30)	2(6)	4(12)	2(6)	3(9)	4(12)	3(9)	4(12)	32(96)
	서울특별시청	5(15)	1(3)	2(6)	1(3)	2(6)	2(6)	2(6)	2(6)	17(51)
	인천광역시청	5(15)	1(3)	2(6)	0(0)	1(3)	2(6)	1(3)	1(3)	13(39)
국가유공자	6(18)	1(3)	2(6)	1(3)	2(6)	2(6)	2(6)	2(6)	18(54)	
장기복무 제대군인	6(18)	1(3)	2(6)	1(3)	2(6)	2(6)	2(6)	2(6)	18(5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24)	2(6)	3(9)	1(3)	3(9)	3(9)	2(6)	3(9)	25(75)	
중소기업근로자	10(30)	3(9)	3(9)	2(6)	3(9)	3(9)	2(6)	3(9)	29(87)	
철거민	3(9)	1(3)	1(3)	0(0)	1(3)	1(3)	1(3)	1(3)	9(27)	
북한이탈주민	3(9)	1(3)	1(3)	0(0)	1(3)	1(3)	1(3)	1(3)	9(27)	
계	56(168)	13(39)	20(60)	8(24)	18(54)	20(60)	16(48)	19(57)	170(510)	

- ※ 「국토교통부 공문」 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시행 주택기금과-1509(2020.02.28.)]에 의거 기관추천 예비자 비율을 300%로 확대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	2021. 10. 22.(금)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www.prugio.com/hb/2021/unjeong)
• 견본주택 개관	2021. 10. 22.(금)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 접수일자	2021. 11. 01.(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 11. 09.(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검수	2021. 11. 11.(목) ~ 2021. 11. 22.(월)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 계약체결	2021. 11. 25.(목) ~ 2021. 12. 05.(일)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 특별공급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으로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이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ul> <p>※ 추천기관</p>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철거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자	LH 인천지역본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철거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자	LH 인천지역본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p>※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됩니다.</p>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원칙 : <b>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b>(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ul>
	<p>■ <b>당첨자 선정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b>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b></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b>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